

《 현 장 설 명 서 》

1. 공 사 명 : 2015년 관내1구역 하수시설물 보수공사(연간단가)
2. 공사목적 : 노후 불량 공공 하수시설물을 적기에 보수·개량하여 주민생활 불편해소 및 수해 등 재난을 사전에 예방코자 함.
3. 공사위치 : 관내 11개동 (성북동, 삼선동, 동선동, 돈암1·2동, 정릉1·2·3·4동, 길음1·2동)
4. 공사개요
 - 하수관 개량(D=250~800mm) : L=1,200m
 - 맨홀신설 및 개량(1호~2호) : N=45개소
 - 빗물받이(1호~2호), 횡단하수거(1~5m) 신설 및 개량 : 140개소
 - 콘크리트포장(T=15~20cm) : A=10a
 -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T=5cm) : A=6a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15.12.31까지
6. 설계변경조건
 - 다음과 같은 경우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 가. 물량 변경이 있을 때
 - 나. 설계도서와 현장의 토질이 상이 할 때
 - 다.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라. 설계변경조건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부서의 유권해석에 준한다
7. 준공기한 변경
 - 다음의 경우에는 본 공사의 준공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 가. 공사시행중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 하였을 경우
 - 나. 시행청의 지시에 의거 작업을 중단하였을 경우

- 다. 지장물의 철거 이설 등으로 공사진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을 때
- 라. 주민의 민원발생으로 공사가 중단될 경우

8. 예정공정표

공 종	수량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비 고
토 공	1 식	_____											
관 로 공	1 식	_____											
구조물공	1 식	_____											
포 장 공	1 식	_____											
부대공 등	1 식	_____											

9. 하수관거 정비공사 참가자의 자격

하수관거 정비공사 품질관리자(품질관리자가 없는 경우 현장 참여기술자중 1인) 및 기능공(하수관거 부설 배관공) 전원은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시행하는 하수관거 정비공사 시공 전문기술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착공시 이수증 사본을 제출하고 공사 시행시 이수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 단, 교육기관 일정 등으로 착공전 교육이수가 불가능한 경우 교육이수 계획서를 제출하고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착공 후 4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여야한다.

10. 현장근로자 실명제 시행

당 공사현장 근로자에게는 소속 회사명과 이름이 새겨진 안전조끼 및 안전장구를 착용토록 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책임감 있고 친절한 언행으로 구민고객 중심의 공사실행으로 구정에 대한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건설현장 근로자 실명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11. 일자리 창출

본 공사에 투입되는 인력중 성북구민 중에서 고용을 희망하는자 2인 이상을 의무 고용하여야 한다.

12. 안전조치

가. 수급인은 공사 시행으로 인하여 인명 피해나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장소가 있을 때에는 즉시 위험표시 및 적절한 응급조치를 수급인 부담으로 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안전사고로 인한 민·형사 사건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되는 모든 책임을 진다.

나. 공사에 필요한 보안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만전을 기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공사시공 중에는 인접해 있는 기존구조물 또는 교통시설물 등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토지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건축물의 파손 등 기타 공정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는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응급 조치를 취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3. 공사시행 및 작업완료 보고

수급인은 발주청의 작업지시가 있을 경우, 작업 대상지에 대한 상세 시공 계획 및 도면을 작성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 지시 기간 내 공사를 완료하고 시공 상황을 실측 한 도면과 공사 전, 중, 후 사진을 첨부하여 작업완료보고서를 감독관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 수급인의 의무

가. 모든 공사는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기술적인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나. 시공시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표준 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시방서와 설계 도서에 부합되도록 수급인이 부담하여 대치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법령에 의해 배치한 현장대리인을 감독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현장을 이탈시켜서는 아니 된다.

15. 기타사항

단가 계약된 물량은 추정 물량이므로 증·감 될 수 있으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4천만원이상 건설공사에 적용됨으로 1회 작업지시 금액에 따라 정산함.